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합509527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A

변론 종결2017. 11. 1.

판결 선고2017. 1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276,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6,54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B공사를 수급받은 후 2009. 7. 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97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은 점차 증액되어오다 2012. 8. 24. 최종변경계약을 통해 22,865,441,5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을 2009. 7. 7.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첨부된 표준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C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C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C 상호 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⑤ C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실손해액과 관계 없이 제2항 제1호의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C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C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하자담보)

① C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원고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C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C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C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4.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C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고에게 납부한다.

⑤ C는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C와 피고와의 계약보증보험계약 체결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C는 2009.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금액을 1,697,850,000원, 보증기간을 2009. 7. 6.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C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증액된 계약금액 부분을 추가로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차 보증계약'이라고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증약관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1)

1	2009. 7. 6.	1,697,850,000원	2009. 7. 6.부터 2013. 9. 30.까지
2	2010. 7. 13.	5,576,780원	2010. 7. 13.부터 2013. 9. 30.까지
3	2010. 10. 1.	38,396,380원	2010. 9. 28.부터 2013. 9. 30.까지
4	2011. 12. 12.	53,787,580원	2011. 12. 6.부터 2013. 9. 30.까지
5	2012. 3. 14.	98,729,400원	2012. 3. 12.부터 2013. 9. 30.까지
6	2012. 4. 25.	284,440,750원	2012. 3. 12.부터 2013. 9. 30.까지
7	2012. 8. 29.	107,763,260원	2012. 8. 24.부터 2013. 9. 30.까지

2) 이 사건 1차 보증계약 체결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에 따라 C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1) C는 2012. 10. 26. 원고에게 '당사의 사정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며, 추후 이 사건 공사 관련으로 민, 형사상의 이의 제기 및 보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각서로 확약합니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2) 위와 같은 C의 공사포기로 인하여 C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2012. 10. 26.까지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29. 준공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C는 위 공사포기 당시인 2012. 10. 26.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가 수행한 공사대금을 21,980,2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3) 원고는 2012. 10. 31. C에 대하여 'C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 사건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C에 도달하였다.

라. 잔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원고는 2012. 11. 23. 다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다우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C가 시공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11. 24.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불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2,286,544,150원을 지급하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사유인 C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인 2012. 10. 31. C에 대하여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계약이행의무를 보증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C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C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그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의무가

있는 C가 자신의 사정으로 그 공사기간 도중 공사 진행을 포기하였고, 공사 중단 시까지 C가 수행한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였다는 등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와 같은 C의 공사 포기는 그 자체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C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C가 2012. 10. 26.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는 2012. 10. 29. C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2012. 10. 26.까지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C는 위 공사포기 당시인 2012. 10. 26.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가 수행한 공사대금을 21,980,2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12. 10. 30. 착공일을 2009. 7. 7., 준공일은 2012. 10. 26., 계약금액을 위 정산금액인 21,980,2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12. 11. 6. 위와 같이 준공검사가 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12. 10. 말경 이루어진 위와 같은 준공검사, 기성금 정산, 변경계약 체결,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등은 C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C가 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중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적용 법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보증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보증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산업기본법 67조 제2항(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을 통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률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은 2009. 7. 6., 이 사건 2차 보증계약은 2010. 7. 13., 이 사건 3차 보증계약은 2010. 10. 1.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1~3차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지급 청구권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67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체결된 이 사건 4~7차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지급 청구권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2~7차 보증계약은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보증금액만 증액된 것이므로, 이 사건 2~7차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적용법률 또한 이 사건 1차 보증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을 기초로 이 사건 2~7차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7차 보증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이 사건 1차 보증계약에서 보증하고 있지 아니한 계약금액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2~7차 보증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2~7차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적용법률은 이 사건 2~7차 보증계약이 체결된 각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그 전 순번의 보증계약을 갈음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각 보증계약이 별도로 성립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7차 보증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적용법률을 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3차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이 사건 4~7차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이 2013. 9.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2.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4~7차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지급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멸시효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2014. 7. 4.과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지급을 위한 심사 등을 이유로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면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회신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금지급 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최고의 효과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2014. 7. 4.과 2014. 7. 24.자 보증금지급 청구에 대하여 2014. 7. 21.자와 2014. 8. 13.자 회신으로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증금지급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보증책임의 범위

1) 관련 조항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항은 'C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실손해액과 관계 없이 제2항 제1호의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는 보증금 지급한도를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정한 금액으로 하되, 주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지된 사실, 이 사건 4~7차 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증금지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1~3차 보증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인 1,741,823,160원(= 1,697,850,000원 + 5,576,780원 + 38,396,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감액 주장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감액을 구하는 반면, 원고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항은 'C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실손해액과 관계 없이 제2항 제1호의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6항에서는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C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C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계약이행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손해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서 계약이행보증금의 물취로써 그 손해배상에 갈음하고(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항),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C가 배상책임을 진다(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7조 제6항)는 취지로서,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C가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5항에 실손해액과 관계 없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총공사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시 C는 이 사건 공사의 약 93%를 수행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당부분 이행하였고, 위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점,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무렵 C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유지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의 잔여공사 수행에 상당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30% 감액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3차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서 1,219,276,212원[= 이 사건 1~3차 보증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합계 1,741,823,160원(= 1,697,850,000원 + 5,576,780원 + 38,396,38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최초로 청구한 다음날인 2014.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형훈

판사조실

판사이인민

별지

1) 이 사건 3차 보증계약의 약관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